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와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를 공급하
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토지를 공
급한다. 다만,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내 외국교육기관
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법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
우에는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정
하는 가격에 따른다.

③ 법제24조의3제3항에서 “조성원가”란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
가 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과정에서 직·간접으로 투입한 총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용지비

2. 용지부담금
3. 조성비
4. 기반시설 설치비
5. 직접인건비
6. 이주대책비
7. 판매비
8. 일반관리비
9. 자본비용
10. 그 밖의 비용

제27조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	50	100	180
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	70	12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토지를 공급한다. 다만,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법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③ 법제24조의3제3항에서 “조성원가”란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과정에서 직·간접으로 투입한 총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용지비
2. 용지부담금
3. 조성비
4. 기반시설 설치비
5. 직접인건비
6. 이주대책비
7. 판매비
8. 일반관리비
9. 자본비용
10. 그 밖의 비용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신 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u>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u>	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 ----- -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총액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	
연 락 처	(02) 6424 - 6112